

---

**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**

---

2009. 10. 20

**행 정 건 설 위 원 회  
전문위원 신 승 관**

# **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**

---

## **1. 제안경위**

- 가. 제 안 자 : 마포구청장
- 나. 제 출 일 : 2009. 10. 06
- 다. 위원회회부 : 2009. 10. 07
- 라. 위원회 회부근거 :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

## **2. 개정이유**

「교통안전법」이 개정(2006. 12. 28 법률 제8121호)되고 2008. 1.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법령 내용에 맞춰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## **3. 주요내용**

- 가.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(안 제명)
- 나. 위원회 명칭 “서울특별시마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”로 변경 (안 제1조)
- 다. 마포구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명시 (안 제2조)
- 라. 위원회 구성(20명 이내) 및 위원의 임기(3년)를 규정 (안 제3조 제6조)
- 마.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(안 제8조)

## **4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 - 1) 개정문안 : 따로붙임
  - 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(2009.07.30 ~ 08.19) 결과, 의견제출 없음

## 5. 조례안 검토사항

-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교통 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, 개정전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들을 법령 내용에 맞춰 수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조례안 검토결과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8조 제1항에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”로 규정하고 있는데, 같은 항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, “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”에서 “이상”을 삭제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만 개최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면 수시로 임시의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됨

## 전문위원 수정의견

원 안	수 정 안
제1조~제7조 “생 략”	제1조~제7조 “원안과 같음”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, <u>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</u> <u>개최하고</u>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	제8조(회의) ① ----- -----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 최하고----- ----- ② “원안과 같음”
② “생 략”	

## **교통안전법**

**제13조 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4조 (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)** ①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22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** ① 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 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

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8조 (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)** 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9조 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)**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20조 (계획수립의 협력 요청)** ①국토해양부장관, 지정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,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 교통안전법시행령

**제8조 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 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  
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**제13조 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·장기 종합정책방향
  2.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
-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·도지사등"이라 한다)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·도지사는 이를 종합·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.